

[발 간 사]

“자유로운 경찰법의 실천을 위하여”

법학은 실천적 학문입니다. 법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둘러싼 팽팽한 갈등과 다툼은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법적으로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 그 사회는 많은 비용을 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과 국민 생활의 접점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권 행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특성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실무는 명확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불명확한 관행에 의존해온 점이 많았습니다.

6·29항쟁이후 도도히 밀려오는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경찰은 종래의 실무상 잘못을 비판받아야 했습니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연행과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 받을 때까지 이루어졌던 형사피의자대기실 유치, 피의자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었던 피의자의 자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보호실 유치 등,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 대상이었던 피의자가 무죄로 석방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연달아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경찰 실무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 위주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경찰 실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여 왔던 학계도 결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경찰수사권 독립의 논쟁도 검찰과 경찰의 실무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국가기관간 권한 분쟁으로 비치게 된 데에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한 학계의 잘못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등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인권 보장과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형사법학자들은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주요 형사사법기관 중 하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법에서도 경찰은 전통적인 주제임에도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경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학이 실천학문이라면 이제 법학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학자로서 양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소장

학자와 경찰실무가, 법조인들이 모여서 한국경찰법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단순히 행정법상 경찰에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나 검찰과 함께 중추적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법률' 등 경찰소관법률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 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국제법 등도 우리의 연구 대상입니다. 결국 경찰법학회는 경찰을 법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하는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법적 문제는 단순히 경찰행정법이나 형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과법학간의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경찰의 법적 문제는 학계와 실무와의 부단한 대화와 토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모여서 학제간 경학합동연구를 하는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에 대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법학회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프로그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술회의 진행도 조직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강제되기보다는 회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토론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학회가 일정한 대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발제자를 섭외한 것이 아니라, 경찰실무, 형사법, 행정법 및 법일반(법조실무 포함) 4분야에서 각각 돌아가면서 먼저 발제자를 선정하고, 발제자 개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고 그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에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편안하게 하는 치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경찰법연구 발간을 축하해 주신 경찰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학자와 실무가들의 경찰에 대한 연구 열정에 동의하시고 축하해 주신 김동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지 편집과 출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김성수 출판이사과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산뜻하고 내용적으로 정돈된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김광호 대한문화사 사장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3년 6월 1일

한국경찰법학회장

문성도